

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-6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」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폐지이유

「지방회계법」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」의 관련 내용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규칙」에 편입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」 폐지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회계법」 및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4. 16. ~ 5. 6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3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 5. 1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